




|  |   |   |  |
|--|---|---|--|
|  <b>한국소비자원</b><br>Korea Consumer Agency |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  페이스북 @kcanews<br> 인스타그램 @kca.go.kr |  |
| <b>이 자료는 8월 17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8월 16일(목) 12시]</b>   |   |   |  |
| <b>배포일</b>   | 2018년 8월 15일(수)<br>(총 8쪽)                     | <b>담당부서</b>   |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
|  |   | <b>담당자</b>  | 김제란 팀 장 (043-880-5841)<br>박동은 조사관 (043-880-5847) |

## 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해외 인증기준에 못 미쳐 -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고려한 국내 규정 마련 시급 -

최근 화학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세안용품 대용으로 천연비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는 천연비누의 원료 대부분이 천연성분이므로 부작용이 없고 피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쳐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대부분 제품 천연성분 함량 확인 어렵고,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도 미달해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 The NPA Natural Seal(미국) :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등
  - ECOCERT(프랑스) :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5% 이상 유기농 원료 함유 등
  - BDIH(독일) : 자연 유래 원료만을 사용, 합성 색소·향료·방부제 사용 금지 등

※ 천연비누는 현재 공산품에 해당하나,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함. 우리나라는 천연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포함한 「화장품법」(2019.3.14. 시행)이 올해 3월 공포되어 세부 내용이 시행규칙, 고시 등에 반영될 예정임.

## □ 조사대상 24개 중 23개(95.8%) 제품은 표시기준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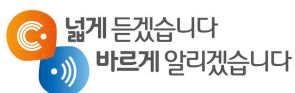
천연비누(화장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나, 현재는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되어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 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다.

\* 천연비누(화장비누)는 현재 공산품에 해당하여 유리알칼리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 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포름알데히드, 디옥산, 파라벤 6종에 대해서는 유통화장품 관리항목 및 사용제한원료의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함.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자연주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한류열풍으로 해외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 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http://www.kca.go.kr)



## < 붙임 >

### 1 정의 및 현황

#### 가. 비누

- (정의) 넓은 의미로 포화 및 불포화 고급지방산·토르유(油) 지방산·수지산·나프텐산(酸) 등의 금속염을 통틀어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주로 세정에 사용되는 고급지방산의 수용성 알칼리 금속염을 말함.<sup>1)</sup> 용도에 따라 세안·세탁·주방용으로, 형태에 따라서는 고체·액체·가루형으로 나눌 수 있음.
- (분류)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폼 클렌저(foam cleanser),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액체 비누(liquid soaps), 외음부 세정제, 물휴지,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고체상태) 비누'로 정의되는 '화장비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음.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2016년 11월)에 따라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임.

#### 나. 천연화장품

- (정의) 식물성 오일 및 자연·천연에서 추출한 재료를 사용하고 화학적인 유해성분이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피부에 자극이 적으며 피부 기능을 점차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화장품<sup>2)</sup>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천연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이 포함된 개정 「화장품법」이 금년 3월 공포되어 내년 말에 시행예정이며, 세부 내용이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반영될 예정임.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 천연화장품에 대하여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인증마크 부착이 의무는 아니나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음.

1) 두산백과

2) 20~50대 여성의 DIY 천연 화장품 인지도, 사용실태, 만족도, 안전성 및 부작용인식 비교, 박은주, 2012.

- (현황)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화학성분의 위해성에 대한 보고가 지속되고, 웰빙·휘게라이프·미니멀리즘 등 자연 친화적 삶의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화장품 업계에서도 자연주의 화장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전 세계 자연주의 화장품 시장규모는 2008년 75억 달러에서 2015년 127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고, 국내 유기농 화장품 시장규모도 2013년 기준 약 900억이며, 연평균 8~9%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음<sup>3)</sup>.
- 특히, 환경오염에 따른 아토피·여드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민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일반 세안용품 대용으로 '천연비누'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 2 관련규정

### 가. 기준·규격

- 천연비누(화장비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 화장비누 품질 규격<sup>4)</sup> ]

| 항목              | 경질비누   |        |
|-----------------|--------|--------|
|                 | 틀 성형품  | 기계 성형품 |
| 수분 및 휘발성 물질 (%) | 28 이하  | 16 이하  |
| 순비누분(%)         | 93 이상  | 93 이상  |
| 유리 알칼리(%)       | 0.1 이하 | 0.1 이하 |
| 석유 에터 가용 성분(%)  | 3.0 이하 | 3.0 이하 |

- 천연비누(화장비누)가 「화장품법」으로 이관될 경우, 식약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살균 보존제 등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는 해당기준을 준수해야 함.

3) 주요국 천연화장품 시장동향, Kotra, 2015.

4)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

## 나. 표시기준

- 천연비누(화장비누)는 최소로 판매되는 단위마다 날개 또는 포장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규정된 기재사항을 한글로 표기해야 함<sup>5)</sup>.

### [ 화장비누의 표시사항 ]

|                       |     |   |
|-----------------------|-----|---|
| 1. 품                  | 명 : |   |
| 2. 중량(수분포함) :         |     | g |
| (건 조) :               |     | g |
| 3. 주성분                |     |   |
| 4. 수량(포장된 것에 한함)      |     |   |
| 5. 제조연월               |     |   |
| 6. 제조자명               |     |   |
| 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 함)     |     |   |
| 8.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   |
| 9. 제조국명               |     |   |
| 10. 사용상 주의사항          |     |   |

- 천연비누(화장비누)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사항을 표시해야 함<sup>6)</sup>.

### [ 화장비누의 사용상 주의사항 ]

|   |
|---|
| 1) 피부에 상처,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
| 2) 사용중 피부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
| 3) 눈에 들어갔을 때는 깨끗한 물로 씻어 주시오.                              |
| 4) 인체 세정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
| 5)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5)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

6)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오픈마켓(11번가, 옥션, G마켓) 매출상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위 랭크된 제품
- 조사항목 : 유해성분 9종(포름알데히드, 디옥산,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유리알칼리) 함량 시험 및 표시정보 분석

## 가. 시험검사 결과

-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디옥산, 파라벤 6종(메틸 파라벤 · 에틸파라벤 · 프로필파라벤 · 부틸파라벤 · 이소프로필파라벤 · 이소부틸파라벤), 유리알칼리에 대해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

## 나. 표시실태 조사 결과

-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23개(95.8%) 제품은 표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함.
  - '품명(화장비누)',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18개(75.0%), 그 외 제조 연월, 주성분, 주소, 중량 등의 순으로 미표시가 많았음.

## 다. 천연성분 함유 여부 검증 결과

-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하였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 일반 식품의 경우에는 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함<sup>7)</sup>.

7)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2호)

□ 조사대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음.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5개 업체)하거나 회신하지 않았음(11개 업체).

○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 The NPA Natural Seal(미국) :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등
- ECOCERT(프랑스) :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5% 이상 유기농 원료 함유 등
- BDIH(독일) : 자연 유래 원료만을 사용, 합성 색소·향료·방부제 사용 금지 등

## < 첨부 > 조사대상 천연비누 '천연' 용어 사용 및 광고 현황

| 구분       | 제품명             | 제품명에<br>'천연' 용어<br>사용 | 제품명에<br>'천연 원재료명'<br>사용 | 천연성분<br>'효능·효과'<br>광고 |
|----------|-----------------|-----------------------|-------------------------|-----------------------|
| 1        | 파프리카 비누         | -                     | ○                       | -                     |
| 2        | 아비셀 어성초 천연비누    | ○                     | ○                       | ○                     |
| 3        | 마마사봉 진피 천연비누    | ○                     | ○                       | ○                     |
| 4        | 아이샤드 천연비누 쌀겨    | ○                     | ○                       | ○                     |
| 5        | 룩키스 티트리 각질비누    | -                     | ○                       | -                     |
| 6        | 복룡간 미용비누        | -                     | ○                       | -                     |
| 7        | 딸바보가 만드는 비누 팔울피 | -                     | ○                       | ○                     |
| 8        | 천연숙성비누 보성녹차비누   | ○                     | ○                       | -                     |
| 9        | 미라클 터치          | -                     | -                       | -                     |
| 10       | 농축어성초(지복합성)     | -                     | ○                       | -                     |
| 11       | 미앤솜 청대비누        | -                     | ○                       | ○                     |
| 12       | 부에노 천연 수제비누 치자  | ○                     | ○                       | ○                     |
| 13       | 태현테라피 천연비누 알로에  | ○                     | ○                       | -                     |
| 14       | 천연숙성비누 숯        | ○                     | ○                       | -                     |
| 15       | 신기석 비누          | -                     | ○                       | -                     |
| 16       | 코코비나 노니 비누      | -                     | ○                       | -                     |
| 17       | 딸기비누            | -                     | ○                       | -                     |
| 18       | 노니비누            | -                     | ○                       | ○                     |
| 19       | 레옹 어성초 비누       | -                     | ○                       | -                     |
| 20       | 레몬 생즙 천연비누      | ○                     | ○                       | -                     |
| 21       | 블랑비누            | -                     | -                       | -                     |
| 22       | 바이오밍 모낭 크린 수제비누 | -                     | -                       | -                     |
| 23       | 모야비누            | -                     | -                       | -                     |
| 24       | 수제비누12곡물        | -                     | ○                       | -                     |
| 합계(제품 수) |                 | 8                     | 20                      | 7                     |